

「구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 당초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(안 제7조)
- 당초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
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구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'23.12월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